

農村地域 人口動態申告資料의 正確性에 관한研究

▲ I. 序 言
 目 II. 資 料
 三. 分析結果
 次 V. 要約 및 論結

I. 序 言

人口動態統計는 諸般 政策手段의 基礎資料가 된은 물론 保健事業에도 없어서는 안될 重要한 統計이다. 그러나 現行 申告制度를 通해 信賴性 있는 人口動態統計는 生產되지 못하고 있다.

信賴度 높은 人口動態統計는 申告方法에 의하여 落集된 資料에서 生產되기 때문에 人口動態申告率이 높고 또 申告된 資料가 正確해야만 有用性 있는 統計를 얻을 수 있다.

우리 나라는 낮은 申告水準을 높이기 위하여 申告制度의 改善과 人口動態統計의 계속적 落集을 위한 여러가지 努力이 있었다.

經濟企劃院은 1962年 統計法의 制定과 人口動態調查規則을 施行하여 法的體制를 정비하였고, 申告率 向上을 위해 1961年부터 人口動態申告 강조기간을 설정하여 申告啓蒙 및 移行에 힘썼다.

이 외에 여러 研究機關에서 人口動態統計 改善을 위한 研究와 改善案이 제시 되었다. 즉 家族計劃研究院¹⁾, 延世大學校²⁾, 人口問題研究所³⁾, 崔⁴⁾, 趙⁵⁾ 등의 改善案 및 研究가 報告된 바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努力에도 불구하고 人口動態 申告水準과 資料의 正確性은 별로 向上되지 않았다. 이의 主原因은 遲延申告에 있음이 發見되었다. 즉, 經濟企劃院⁶⁾이 推定한 1966年的期待發生件數에 대한 當年 申告率은 出生에서 34%, 死亡에서 42%였다.

家族計劃研究院⁷⁾에서 全國 25개 地域을 대상으로 한 保健組織網을 통한 人口動態申告 改善 調查研究에서는 1969年 9月부터 1971年 8月까지 24개월간의 出生申告率이 都市地域에서 39%, 郡部地域에서 39%였고, 死亡申告率은 都市地域이 46%, 郡部地域은 37%였다.

梁⁸⁾등의 1965年 金泉市 및 그周邊地域의 調查에서는 1965년 出生의 當年 出生申告率은 32%, 死亡申告率은 27%였다.

* 本研究院 研究員

- 1) 宋建鏞, 林鍾權 保健組織網을 통한 人口動態申告 改善 調查研究(綜合報告), 家族計劃研究院, 1974. 9.
- 2) 梁在謨 外 5人, 韓國 家族計劃事業의 支援方案과 正確한 人口動態統計의 把握을 위한 研究, 延世大學校, 1962.
- 3) 人口問題研究所, 人口動態統計 改善方案, 1967.
- 4) 崔仁鉉, 韓國 人口動態統計의 現況과 問題點, 서울대학교 文理科大學 附設 人口問題研究所, 1969.
- 5) Cho, Lee-Jay, The Level of Fertility and Mortality in a Korean Rural Community, Korean Journal of Sociology, Vol. 2, 1966, pp. 143-146.
- 6) 經濟企劃院, 1966年 人口動態統計, 1968, p. 9.
- 7) 宋建鏞, 林鍾權, 全國保健組織網을 통한 人口動態申告改善 調査研究(綜合報告), 가족계획연구원, 1974년 9월 p. 18, 45.
- 8) 梁在謨 外 5人, 韓國家族計劃事業의 支援方案과 正確한 人口動態統計의 把握을 위한 研究, 1969, pp. 65 ~66.

한편 經濟企劃院⁹⁾이 發表한 1969年 總出生申告數中 當年度 發生分의 申告比率은 29%에 불과 했고, 申告된 대부분이 遲延申告 즉 過年度 發生이었다.

臺灣¹⁰⁾의 경우를 보면 當年申告率이 거의 100%에 이르고 있다. 이 나라의 當年申告率은 1970 ~71年 總出生申告중 當年度申告比率은 92%였다.

우리 나라의 人口動態에 관한 申告는 現在 1962年 11月에 公布된 「人口動態規則」에 따라 出生은 14日 以內 死亡은 10日 以內, 婚姻은 記載 즉시, 當事者 또는 後見人에 의해서 申告하도록 되어 있다.

人口動態申告 資料는 높은 遲延申告率로 인하여 利用할 수 없다는 것은 前述한 바와 같으나, 每日에 當年度 申告率(發生된 모든 人口動態事件이 當年度에 申告된 率)이 100%에 접근한다고 할 때에 우리 나라의 申告資料가 統計의 生產에 이용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問題가 생긴다. 즉 申告된 人口動態事件은 정확히 實際發生日이 기재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다.

申告에 대한 關心이 적고, 遲延申告에 대하여 일정 額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現制度에서, 申告書에 기재된 發生日과 實際發生日의 不一致가 야기될 素地는 크다.

人口動態申告의 不振形態는 申告의 不履行 또는 遲延申告로 區分될 수 있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 문제되는 것은 지연신고이다. 法規로 규정한 期限內에 申告를 履行하지 않은 事件은 申告期間의 長短에 關係없이 遲延申告이다.

本研究는 既申告된 自然動態(出生, 死亡) 事件을 추적하여 그 事件의 實際發生日을 알아내고 公簿(戶籍)上에 기록된 發生日 간의 時間的 差異를 調査하여 다음 몇 가지를 分析한 것이다.

- ① 實際發生日과 戶籍上 發生日
- ② 申告日과 戶籍上 發生日
- ③ 申告日과 實際發生日

이 分析을 통하여 人口動態申告에 대한 國民의 認識水準과 申告資料에서 統計生產을 위한 考慮點 등이 파악되고, 이 結果는 우리 나라 人口動態申告 및 統計生產의 改善에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II. 資 料

家族計劃研究院은 人口動態統計 改善을 위한 實驗研究事業을 1973年 4月부터 1974年 12月 期間에 忠北 報恩郡 全地域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 實驗研究의 基礎資料가 되는 家口調查에서 把握된 1972年度에 發生한 出生 및 死亡事件이 本研究資料로 사용되었다.

基礎調查에서 밝혀진 報恩郡內의 1972年의 出生은 2,246件, 死亡은 363件이었다. 1972年에 發生된 事件에 대한 申告與否를 確認하기 위하여 각 事件의 該當 本籍地로 戶籍對照確認表가 1974年 10月末에 申告確認을 위해 우송되었다.

戶籍對照確認 의뢰지역(市, 區, 邑, 面)數는 150個所였고, 이 중 戶籍確認된 地域은 138個所로서 戶籍確認回信率은 92%였다. 戶籍確認된 資料의 內容은 다음 表와 같다.

이러한 戶籍對照確認 節次를 통해 申告된 것으로 確認된 出生은 1,632件, 死亡은 192件이었으며, 이들을 本籍地別로 보면 同一本籍(現居住地와 本籍地가 일치)의 出生이 1,395件, 死亡은 175件이었고, 他本籍(現居住地가 本籍地 아님)의 出生은 237件, 死亡은 17件이었다.

9) 經濟基盤院 1970, 총인구 및 주택조사보고, 제 2권 출산력, p. 252.

10) Ministry of Interior, Republic of China, 1971 Taiwan Demographic Fact Book, Nov. 1972, p. 29.

Registration Status

(Boeun-Gun, Chungbuk Province)

| Event | Registered | Nonregistered | Unknown |
|----------------|------------|---------------|---------|
| Births (2,198) | 1,632 | 435 | 131 |
| Deaths (358) | 192 | 153 | 13 |
| Total (2,556) | 1,824 | 588 | 144 |

다음 表는 戶籍對照確認에 사용된 樣式이다.

Confirmation Card for Civil Records

| Event | Name (event) | Head of household | Permanent address | Present address | Occurrence date of event | Registration date | Note |
|-------|-----------------|----------------------|----------------------|--------------------|-----------------------------|----------------------|------|
| [1] | [2] | [3] | [4] | [5] | [6] | [7] | [8] |

出生, 死亡 戶籍對照確認表의 [1]-[6]란까지는 基礎家口調查에서 얻은 情報가 記錄되었고, [6]-[8]란에는 本籍地 市·區·邑·面 事務所가 戶籍確認한 結果가 기입되었다.

III. 分析結果

1. 事實發生日과 戶籍上 發生日

原則的으로 事實發生日과 戶籍에 기재된 發生日은 같아야 한다. 그러나 <表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忠北 報恩郡에서 1972년에 發生한 出生의 35%만이 事實發生日과 戶籍에 기재된 出生 年月日이 같았다.

戶籍上 出生年月日이 事實發生日보다 6個月以內 늦은 것은 27%, 7~12個月 늦은 것은 30%, 1年以上 늦은 것은 9%였다.

出生이 申告되어야 할 本籍地를 居住地와 동일한 경우(同一本籍)와 他行政區域에 둔 경우(他本

Table 1. Difference between the Actual Date of Occurrence and the Occurrence Date Recorded in the Civil Records for Birth, 1972

(Boeun-Gun, Chungbuk Province)

| Permanent address* | Total | Difference | | | |
|--------------------------------|-------------------|--------------|--------------|--------------|----------------|
| | | Same date | within-6 mos | 7-12 mos | 13 mos or more |
| Same to present address | 100(1,395) | 33.7% | 28.3% | 29.8% | 8.3% |
| Different from present address | 100(237) | 43.9% | 17.3% | 29.5% | 9.3% |
| Total | 100(1,632) | 35.2% | 26.7% | 29.7% | 8.5% |

* There are two types of address, Present address and permanent address, in Korea. Each person has these addresses. Vital registration should be made at the permanent address.

籍)로 나누어 보면,同一本籍보도 他本籍에서 事實發生日과 戶籍上 發生日이 동일한 比率이 약간 높다.同一本籍에서의 比率은 34%였고, 他本籍에서는 44%였다.

이와 같이 事實發生日보다 戶籍에 기재한 出生年月日이 늦은 것은 첫째, 出生申告制度와 關聯이 크다. 出生을 法定期限內에 申告된 것으로 꾸미기 위하여, 즉 申告日에 基準한 法定期限內 申告를 위하여 事實發生日을 허위로 늦추어 申告書에 기재하는 경향이 있다. 法定期限을 넘긴 出生申告는 過怠料가 부과되고 懈怠理由書가 첨부되어야 하는 申告節次의 복잡성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둘째, 農村地域에서 戶籍上 出生年月日에 陰曆을 사용하여 기재하는 경향이 강하다. 申告日은 陽曆을 基準으로 하기 때문에 出生이 陰曆의 發生年月日을 戶籍에 올리려면, 이미 法定期限을 넘기게 된다. 그러므로 事實發生日을 음력으로 기재하려면 法定期限을 넘긴 遅延申告로 취급되고(사실은 그렇지 않더라도) 遅延申告가 要求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셋째, 一般住民의 戶籍上 發生日에 대한 인식이 대단히 낮다. 法的文書로서 一生 그 出生年月日이 사용되므로 正確히 기입되어야 하나 많은 住民은 장래보다 현재의 申告節次에 더 관심을 가짐으로써 戶籍上 發生日이 事實과 다른 경우가 많게 된다.

<表 2>는 1972年에 忠北 報恩郡에서 發生된 死亡의 事實發生日과 戶籍上 發生日의 差異를 나타낸 것이다.

Table 2. Difference between the Actual Date of Occurrence and the Occurrence Date Recorded in the Civil Records for Deaths, 1972

(Boeun-Gun, Chungbuk Province)

| Permanent address | Total | Same date | within-6 mos | 7-12 mos | 13 mos or more |
|--------------------------------|-----------|-----------|--------------|----------|----------------|
| Same to present address | 100(175) | 18.9% | 40.6% | 21.7% | 18.9% |
| Different from present address | 100(17)* | — | — | — | — |
| Total | 100(192) | 18.8 | 41.2 | 20.8 | 19.3 |

* Meaningless because of low frequency

全死亡중 19%만이 事實發生日과 戶籍上 發生日이 일치한다. 出生의 경우보다 이一致率은 훨씬 낮다.

戶籍上 發生日이 事實發生日보다 6個月 以內의 遅延이 41%, 7~12個月 遅延된 것은 21%, 1年以上 遅延된 것은 19%였다. 死亡申告書에 기재된 發生日은 出生의 경우보다 더욱 正確性이 결여되어 있다. 그原因是 出生의 경우와 類似하지만 특히 死亡의 경우 老人死亡에서 1年 또는 2年이 경과된 후 즉 탈상후 申告하는 慣習과 死亡日 자체의 重要性이 出生보다 낮다는 것 등이 事實發生日과 戶籍上 發生日의 낮은一致率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

한편 1972年에 發生한 出生이 戶籍에 기재된 發生年度別 分布는 表 3과 같다.

1972年的 事實發生年度와 同一한 1972年을 戶籍上 出生年度로 기재된 比率은 1974年 10월 현

Table 3. Percent Distribution of Occurrence Year Recorded in the Civil Records among Births Occurring in 1972
(Boeun-Gun, Chungbuk Province)

| Total | 1972 | 1973 | 1974 |
|------------|-------|-------|------|
| 100(1,632) | 58.8% | 39.4% | 1.8% |

재로 申告된 것의 59%, 實在發生年度가 1年이 경과 되었으나, 戶籍上 1973년에 發生된 것으로 記載된 것은 39%, 1974년에 發生된 것으로 기재된 것은 2%였다. 1972년도에 發生된 出生이 100%, 申告된 시기에 이 分布를 計算한다면 發生年度와 동일한 年度가 戶籍에 기재될 比率은 이보다 훨씬 더 낮아질 것이다.

表 4는 1972年에 發生된 死亡의 戶籍에 기재된 死亡年度別 分布를 나타낸 것이다.

Table 4. Percent Distribution of Occurrence
Year Recorded in the Civil Records
by the Actual Date of Occurrence
of Deaths in 1972
(Boeun-Gun, Chungbuk Province)

| Total | 1972 | 1973 | 1974 |
|----------|-------|-------|------|
| 100(192) | 48.4% | 42.2% | 9.4% |

死亡도 出生의 경우와 같이 實在發生年度와 동일한 年度를 戶籍上 發生年度로 기재한 것은 48%로 낮았고, 이 比率은 出生의 경우보다도 낮다.

1972年에 發生된 것을 1973년에 발생된 것으로 戶籍에 기재된 比率은 42%, 1974년에 발생된 것으로 기재된 것은 9%였다.

이와 같이 現申告制度하에서 낮은 申告率도 問題지만, 申告된 資料의 發生日 역시 實체와 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統計的 目的을 위해 이 두 問題가 동시에 해결되어야 한다.

2. 申告日과 戶籍上 發生日

戶籍確認結果에 의하여 申告된 것으로 確認된 出生은 1,632件이었다. 이 중 法定期限인 14日內의 申告水準은 表 5에서와 같이 67%로 戶籍上 發生日을 基準한 法定期日內 申告率은 대단히 높다.

13個月 이상 遲延된 申告率은 10%에 불과하였고, 90%가 出生後 12個月內에 申告가 이루워지고 있다.

Table 5. Difference between the Date of Registration and the Occurrence Date Recorded in the Civil Records for Births in 1972
(Boeun-Gun, Chungbuk Province)

| Permanent address | Total | within legal period* | Difference | | |
|--------------------------------|------------|----------------------|--------------|----------|----------------|
| | | | within 6 mos | 7-12 mos | 13 mos or more |
| Same to present address | 100(1,395) | 69.5% | 13% | 8.3% | 9.1% |
| Different from present address | 100(237) | 54.4 | 16.9 | 14.8 | 13.9 |
| Total | 100(1,632) | 67.3 | 13.6 | 9.3 | 9.8 |

* within 14 days

그러나 家族計劃研究院¹¹⁾이 全國 25개 地域을 대상으로한 保健組織網을 통한 人口動態申告 改善 調查研究에서 밝혀진 實在發生日에서 法定期限內 申告率은 16%로 法定期限內 申告가 극히

11) 宋建鏞, 林鍾權, 全國保健組織網을 통한 人口動態申告 改善 調查研究(綜合報告), 家族計劃研究院, 1974. 9, p. 24.

낮음이 發表되었다.

이 結果와 比較하여 戶籍上 發生日에 준한 法定期限內 申告率은 极히 높다. 그 原因은 前述된 바와 같이 法定期限內 申告率이 경과된 후 申告를 하게 되면 遲延申告로 취급되어 法定期限(解怠理由書 첨부 過怠料)를 받는 것과 戶籍上 發生日에 대한 인식부족등에 있고, 이에 따라 事實發生日과는 다른 허위 發生日을 申告書에 기재하는 경향이 있다.

本籍地別로 보면 동일본적에서 法定期限內 申告率이 70%로 他本籍의 54%보다 높고 13個月 이상의 申告에서는 他本籍의 14%에 비하여 동일본적이 9%로 낮다.

1972年度 死亡事件의 申告日과 戶籍上 發生日의 差異는 表 6과 같다.

Table 6. Difference between the Date of Registration and Occurrence Date Recorded in the Civil Records for Deaths, 1972
(Boeun-Gun Chungbuk Province)

| Permanent address | Total | Within legal period* | Difference | | |
|--------------------------------|------------|----------------------|--------------|----------|----------------|
| | | | Within-6 mos | 7-12 mos | 13 mos or more |
| Same to present address | 100(175) | 84.6% | 12.6% | 2.3% | .6% |
| Different from present address | 100(17)** | — | — | — | — |
| Total | 100(192) | 83.3 | 13.5 | 2.1 | 1.0 |

* Within 10 days

** Meaningless because of low frequencies

申告가 確認된 死亡 192件을 戶籍上 發生日에 기준을 둔 10日內의 法定期限內 申告率은 83%로서 대부분이 높았고 死亡發生後 13個月 경과후 申告한 比率은 1%로 极히 낮다.

出生의 경우보다 死亡에서 戶籍上 記錄에 준할 때 法定期限內 申告率이 높다.

本籍地別로는 동일본이 87%, 他本籍이 71%로 同一本籍을 둔 경우 法定期限內 申告率이 높다.

死亡의 法定期限內 申告率이 높은 理由는 出生의 경우와 유사하나 특히 死亡日에 대한 인식은 出生日보다 더 낮은데서 死亡의 法定期限內 申告率이 더 높은 것 같다.

表 7은 死亡時 年齡別로 申告率과 戶籍上 發生日을 제시한 것이다. 戶籍에 기준을 둔 法定期限內 申告率은 死亡者의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증가한다.

Table 7. Difference between the Occurrence Date Recorded in the Civil Records and Date of Registration by Age at Deaths, 1972
(Boeun-Gun Chungbuk Province)

| Age at death | Total | Within legal period | Difference | | |
|--------------|----------|---------------------|--------------|----------|----------------|
| | | | Within-6 mos | 7-12 mos | 13 mos or more |
| 0~39 | 100(37) | 78.4% | 21.6% | — | — |
| 40~59 | 100(41) | 82.9 | 17.1 | — | — |
| 60+ | 100(102) | 86.3 | 10.8 | 2.9 | 2.0 |
| Total | 100(180) | 82.8 | 14.4 | 1.7 | 1.1 |

0~39歲 死亡에서 이 比率은 78%였고, 60세 이상에서 86%였다.

대부분의 死亡이 戶籍上 申告日에서 6개월이내에 신속히 申告된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戶籍에 기재된 發生年度別로 戶籍上 申告日과 戶籍上 發生日의 分布를 알아 보았다. 이 分布는 申告資料를 그대로 사용해서 작성된 人口動態統計의 해석에 이용될 수 있다.

表 8과 같이 1972年度에 發生된 1,632件의 出生中 事實發生日과 동년인 1972年 戶籍發生數

는 960件으로서 59%였고 이 중 法定期限內 申告率은 52%, 13個月以上 경과된 申告率은 16%였다.

戶籍上 1973年 發生件數는 643件, 이들의 法定期限內 申告水準은 89%이고 13개월이 경과된 申告率은 0.3%이다.

戶籍上 1974년 發生件數는 29件이며 93%가 法定期限內 申告된 것으로 나타났다.

1972년에 發生된 出生을 1974년 10月末 현재로 申告確認을 했기 때문에 현재 未申告分이 어떠한 分布를 나타낼는지 모른다. 그러나 1972년에 發生된 것의 41%는 1973년과 1974년을 實際發生年度로 戸籍上 기재되어 있다.

또한 實제로 過年度 發生이면서 當年度 發生으로 기재하고 동시에 法定期限內 申告率도 높다.

이러한 現象은 法定期限內 申告率이 事實上 申告의 신속한 이행에 별로 효과가 없고 오히려 戸籍上 發生日의 허위기재의 증가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表 9는 1972年度에 발생한 死亡의 戸籍上 發生年度別 分布를 나타낸 것이다.

Table 8. Period between Date of Registration and the Occurrence Date Recorded in the Civil Records by Year for Births Occurring in 1972 (Boeun-Gun, Chungbuk Province)

| Occurrence year recorded in Civil Record | Total | Within legal period* | Difference | | |
|---|----------|----------------------|--------------|----------|----------------|
| | | | Within 6 mos | 7-12 mos | 13 mos or more |
| 1972 | 100(960) | 52.3% | 17.1% | 14.6% | 15.9% |
| 1973 | 100(643) | 88.6 | 8.6 | 1.7 | .3 |
| 1974 | 100(29) | 93.1 | 6.9 | — | — |

* Within 14 days

Table 9. Period between Date of Registration and the Occurrence Date Recorded in the Civil Records by Year for Deaths Occurring in 1972 (Boeun-Gun Chungbuk Province)

| Occurrence year recorded in Civil Record | Total | Within legal period* | Difference | | |
|---|---------|----------------------|--------------|----------|----------------|
| | | | Within-6 mos | 7-12 mos | 13 mos or more |
| 1972 | 100(93) | 76.3% | 18.3% | 3.2% | 3.2% |
| 1973 | 100(81) | 90.1 | 9.9 | — | — |
| 1974 | 100(18) | 88.9 | 11.1 | — | — |

* Within 10 days

1972년에 발생된 死亡中 동일한 年度인 1972년에 死亡한 것으로 戸籍에 기재된 比率은 49%였고, 1973년에 死亡한 것으로 42%, 1974년에 死亡한 것으로 9%가 각각 호적상 發生年度로 되어 있다.

實際發生日이 過年度인 死亡의 戸籍上 申告日과 死亡日의 期間에 있어 특히 10日以內 申告인 法定期限內 申告率이 높다. 當年度 發生에서 76%였고, 過年度인 1973년에서 90%였다.

死亡도 出生의 경우와 같이 法定期限內 申告로 꾸며서 戸籍에 기재한 比率이 높다. 준법정신은 書類上 이루어져서는 무의미하고 이러한 節次로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정확한 統計生產도 기대될 수 없다.

3. 申告日과 事實發生日

事實發生日에 기준을 둔 出生의 發生日과 申告日 간 差異는 表 10과 같다. 6개월 이내의 차

Table 10. Period from Actual Date of Occurrence to the Date of Registration for Births, 1972
(Boeun-Gun, Chungbuk Province)

| Permanent address | Total | Within 6 mos | 7-12 mos | 13 mos or more |
|--------------------------------|------------|--------------|----------|----------------|
| Same to present address | 100(1,395) | 45.2% | 33.2% | 21.6% |
| Different from present address | 100(237) | 33.8 | 36.7 | 29.5 |
| Total | 100(1,632) | 43.6 | 33.7 | 22.7 |

이 즉 事實發生日에서 6개월 이내에 申告된 것은 全申告數의 44%, 1년이내는 77%였다.

戶籍上發生日에 基準을 둔 發生日과 申告日 差가 6개월 이내인 比率이 81%인 것과 比較하여 事實發生日에서는 44%에 불과하다.

本籍地別로는 他本籍이 同一本籍의 경우 보다 發生日과 申告日간 期間이 6개월 이내인 比率이 약간 높다. 同一本籍에서는 45%였고, 他本籍에서는 34%였다.

死亡의 事實發生日과 申告日 差는 表 11과 같다.

死亡日과 申告日간 期間이 6개월 이내인 比率은 57%로서 出生의 경우와 比較하여 약간 높다.

Table 11. Period from Actual Date of Occurrence and the Date of Registration for Deaths Occurring in 1972

(Boeun-Gun, Chungbuk Province)

| Permanent address | Total | Within-6 mos | 7-12 mos | 13 mos or more |
|--------------------------------|-----------|--------------|----------|----------------|
| Same to present address | 100(175) | 57.2% | 21.7% | 21.1% |
| Different from present address | 100(17) | 58.8% | 11.8 | 29.4 |
| Total | 100(192) | 57.3 | 20.8 | 21.9 |

13개월 이후 申告하는 率은 22%로 出生의 경우와 같이 유사하게 높다.

本籍地別로는 他本籍이 同一本籍의 경우보다 6개월내의 申告水準이 약간 높으나 13개월 이후에 申告하는 率은 他本籍이 29%로 同一本籍의 21% 보다 약간 높다.

戶籍發生日을 基準한 申告率 表 5, 表 6은 出生, 死亡 다 같이 法定期限內 申告가 높은 것이 특징이지만 事實發生日에 기준을 둔 申告狀態는 다름을 알 수 있다.

IV. 要 約 및 結 論

우리 나라는 人口動態申告水準이 낮고 그 資料의 正確性도 낮아서 申告資料에서 利用 가능한 統計가 生產되지 못하고 있다. 그 原因은 주로 申告不履行, 遲延申告 그리고 申告資料의 不正確性 등에 있다.

本研究는 이들 問題中 申告資料의 正確性 특히 發生日의 正確性을 評價하기 위하여 忠北 報恩郡內에서 1972年度에 發生된 自然動態(出生, 死亡) 事件을 해당 本籍地의 戶籍과 對照確認된 資料를 이용하여 다음 3개 内容을 比較 分析하였다.

- ① 事實發生日과 戶籍上發生日
- ② 申告日과 戸籍上發生日
- ③ 申告日과 事實發生日

要 約

- 1) 事實發生日과 戶籍上 發生日이 一致하는 比率은 出生의 경우 35%에 불과하였다.
- 2) 死亡에서 事實發生日과 戶籍上 發生日이 一致하는 率은 19%에 불과하였다.
- 3) 1972년도에 發生한 出生을 1974년 10월 현재로 戶籍에 기재된 發生年度別 分布를 보면 事實發生年度인 1972년에 발생된 것으로 戶籍에 기재된 比率은 59%였고, 41%는 1973년 및 1974년이 發生年度로 戶籍에 기재되었다.
死亡에서는 事實發生과 同年に 발생된 것으로 호적에 기재된 비율은 48%였고, 52%는 1973년 또는 1974년을 戶籍에 發生年度로 기재하였다.
- 4) 戶籍上 發生日을 基準한 法定期限內 申告率은 出生에서 67%, 死亡에서 83%로 각각 높았다.
- 5) 死亡時 年齡別로 戶籍上發生日에 기준을 둔 法定期限內 申告率은 0~39歲 死亡에서 78%, 60歲 以上에서 86%로 死亡者의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法定期限內 申告率은 높았다.
- 6) 事實發生日에 기준을 둔 發生後 6개월 이내 申告率은 出生에서 44% (戶籍上發生日에 기준을 둘 때 同申告率은 81%임), 死亡에서 57% (戶籍上 發生日에 기준을 둘 때 同申告率은 97%임)였다.

結 論

正確한 人口動態統計의 必要性이 증대하고 있으나, 申告를 통해 이용가능한 統計가 生產되지 못하고 있다.

本研究는 낮은 申告率 또는 지역신고로 특징지워진 申告不振 이외에 申告資料의 正確性 즉 申告書에 기재된 發生日의 正確性이 결여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研究를 통해 申告資料의 正確性을 높이기 위해 다음 3個項의 改善方案이 권장될 수 있다.

첫째, 出生 및 死亡 申告書에 실제로 發生한 時期가 기입되기 위해, 法的文書로서의 申告記錄의 중요성에 대한 住民의 認識이 높아져야 한다.

둘째, 發生年月日을 陰歷에 의거 기입하는 관습을 타파하여 양력을 사용토록 해야 한다.

셋째, 住民이 갖는 申告에 대한 낮은 認識, 陰歷使用, 遲延申告에 수반되는 복잡한 申告節次 등을 고려하여 法的申告期限은 농촌지역에서 현재보다 연장되어야 한다.

<Abstract>

Accuracy of Vital Data Derived from Civil Registration in Rural Areas

by Jong Kwon Im

The present civil registration system has not produced good quality vital statistics in Korea. This is due to a low level of registration, delayed registration, and lack of accuracy.

The paper studies the degree of accuracy of the occurrence date of vital events registered in the civil records by determining differences between the actual date of occurrence and the date recorded in the civil records, between the date of registration and the occurrence date recorded in the civil records, and between the date of registration and the actual date of occurrence.

The data

An experimental project for promotion of vital registration was conducted in a rural community, Boeun-Gun (county), Chungbuk Province in 1973-74. Before launching the project, births and deaths occurring in 1972 were enumerated by means of a baseline household survey. Second, all the events were compared with the civil records at the registrar's office for confirmation of registration.

The data is the registered events of births and deaths from the matching as of the end of October, 1974. A total of 1632 birth events and 192 death events were used for the study.

Main findings

1. The proportion of concurrence of the actual date of occurrence and the date recorded in the civil records was 35 percent of all registered births and 19 percent for all deaths.
2. Among the birth events actually occurring in 1972, 59 percent were recorded in the civil records as occurring in 1972 and 41 percent as occurring in 1973 or 1974.
3. Among the death events actually occurring in 1972, 48 percent were recorded in the civil records as occurring in 1972 and 52 percent as occurring in 1973 or 1974.
4. The data derived from civil records indicated that 67 percent of all birth events

* Researcher, KIFP

were registered within 14 days after their occurrence (the legal limit for birth registration), and 83 percent of all death events were registered within 10 days after their occurrence (the legal limit for death registration).

5. On the other hand, actual data from the household survey showed that 20 percent of all birth events were registered within one month after birth and that for death events, 32 percent were registered within one month after the occurrence.

Conclusions

There are several reasons for the poor quality vital statistics resulting from the present civil registration system. These include a low level of registration and delayed registration. Poor accuracy of vital data in the civil registration system as described above is another cause of poor quality vital statistics in Korea.

An improvement in vital statistics will accompany prompt registration and a high level of registration of vital events (births and deaths) and an increase in accuracy of the date of occurrence recorded in the civil records. In order to improve accuracy, the importance of entering the occurrence date in the legal record should be realized and the lunar calendar should no longer be used for civil registration.

Additionally, the complicated procedures of registration necessary after passing the legal limit of registration should be extended to permit the actual date of occurrence to be recorded in the civil records in rural areas (about one or two months).